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48 | 2026. 9. 7. (2026. 8. 31. ~ 2026. 9. 6.)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을 발표했습니다.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번 전략은 정부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입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최초로 지정했고,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스마트농업, 선박 자율운항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입법(행정)예고】

<해양수산부>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

본비용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하기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6인)」**,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제품화·매출·고용·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지급청구를 인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7. 및 9.8.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실시될 예정이며, <법사위>, <재경위>, <국방위>, <산자중기위> 등에서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개최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발표(국무조정실)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재정경제부) 12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2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2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13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예산처)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해양수산부) 14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원자력안전위원회)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18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19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20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4인) 20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3
•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김병주의원·유용원의원 등 16인)	23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5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5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6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26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6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7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27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28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28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9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30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31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31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3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32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3
•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5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
- [환경] 2026년 8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 **[건설/부동산]** 공사현장에서 측정된 소음자료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 **[건설/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상 정산구조에 따라 실제 토지매입비용의 초과분 공제를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방송통신(TMT)]**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확보한 AI 학습용 데이터 29종 본격 개방
- **[건설/부동산]**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추인의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7. 29. - 2026. 8. 11.)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발표 - 향후 5년간 정부 R&D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 이상 투자 - 글로벌 AI 경쟁력 5위→3위, 반도체 소부장 자립화율 30%→50%,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 41%→80%, 세계 100 대 연구기관 2개→5개 - 논문 3,381만 건 AI 분석과 전문가 216명 집단지성으로 수립... 매년 투자방향·예산 배분·조정·지출한도에 반영하는 롤링플랜으로 운영	2026-08-31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9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이하 '투자전략')을 확정하였다고 밝힘.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에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이번 전략은 정부가 추격형 성장 모델의 한계를 뛰어넘어, 향후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전략임

□ 비전 및 전략

- 투자전략의 비전은 '과학기술 N·E·X·T 투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
-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입) 향후 5년간 정부 R&D 200조원 이상 투자, ▲(산출) 세계 최상위급 AI 모델 개발, 세계 최고 피지컬 AI 역량 확보, 반도체 제조 세계 1위 유지, 첫 상용 SMR 건설 ('35), ▲(성과) 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국정과제 20·26번)을 목표로 제시
- 투자 포트폴리오는 10개 기술분야와 8개 정책분야를 아우르는 20개 분야를 4대 전략·8대 과제로 재편했으며, 전략별 머리글자를 모은 것이 'N·E·X·T'

□ 주요 내용

<전략N> 국가의 명운을 건 3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을 결집한다

- ① (신뢰할 수 있는 AI) AI 모델·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에서 최고 역량을 확보해 전(全) 분야 AX의 기반 조성
- ② (주력기술 초격차) 차세대 HBM·PIM·뉴로모픽·화합물 반도체 등 극미세·적층형 소자와 국산 AI 모델 특화 반도체를 선제 개발하고, 권역·특성별 14개 공공팹 전문화로 AI 반도체부터 SW·서비스까지 국산으로 채운 'K-AI 반도체 풀패키지' 생태계를 구축

<전략E> 7대 SEED가 다음 20년을 연다 — SEED+α 역량강화

- ① (차세대 프론티어) AI×Bio 연구거점과 2029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으로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개발하

고, 국산 풀스택 양자컴퓨터 완제품 2종과 100km급 양자네트워크를 실험경에서 검증하며, 2030년 국내 최초 민간 주도 달착륙에 도전

② **(첨단공급망·미래청정에너지)** 희토류 대체·저감·재활용 기술과 극한소재 개발로 공급망 리스크에 정면 대응하고, AI 자율실험실로 소재 개발기간을 절반으로 감축

③ **(국방(+α))** 데이터 기반 전략·전술 선택과 다종 무인 무기체계 통합운용 등 한국형 국방 AI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데이터 접근성 확대와 연구·획득절차 단축으로 'K-팔란티어' 성장 환경을 조성

<전략X> 사람과 지역으로 생태계를 넓힌다 — 성장의 과실은 모두에게

① **(기초연구·출연(연)·미래인재)** 출연(연)은 인건비 수주 경쟁으로 내몰던 PBS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며, 기관별 임무 중심의 전략연구로 전환해 세계 100대 연구기관을 2개에서 5개로 확대

② **(지역 R&D·중소벤처)** 지자체가 특화산업 R&D를 직접 기획·집행하고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형 R&D를 4.2%에서 15%로 확대해 5극 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비수도권 우수 연구자에게 10년간 안정적 연구를 보장하는 지역 장기연구를 신설

<전략T> 신뢰가 뒷심이다 — 국민의 삶과 투자 시스템 혁신

① **(재난안전·국민체감 R&D)** AI를 재난안전에 접목해 위기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임무·상황별 피지컬AI를 현장에서 실증

② **(투자 시스템 혁신)** 한도설정-예산편성-평가-성과확산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고 편성·관리·평가 과정에 AI를 도입

국무조정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발표

- 2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최초 지정, 12개 특례 부여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확정

2026-09-01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첫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을 받아 규제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특구 내에서 신기술·신산업 참여사업자들에게 규제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실험활동을

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 안전성 등이 확인될 경우에 규제를 합리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이번 지정으로 총 12개의 규제특례가 부여되며, 그동안 제도적 제약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스마트농업, 선박 자율운항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2곳) >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정부에서 특정 제품·서비스 중심으로 실증을 하다 보니 그 결과가 공급망 가치사슬로 연결되지 못해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특정 지역 한 곳에서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국가 전체 표준으로 정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그러한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에 광역연계형특구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번 특구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스마트농업특구’와 ‘신해양레저특구’ 2곳을 광역연계형특구로 지정기로 의결하였음

1]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직류전원 활용 농기계 충전·자율작업 실증

전남광주가 중심이 되고 전북과 충남이 함께하는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특구’는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전기농기계의 자율작업을 실증하는 특구로, 특구 지역별로 소재한 사업자들이 각각의 지역에서 특화 기술을 실증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임

이번 실증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의 실증특례 8건이 적용되었고, 실증 목표가 달성된다면 영농 작업효율 개선, 국가표준 선도 및 직류(DC) 전력망의 상용화 완성도를 높여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2]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 레저선박 자율운항·무인구조 실증

경북이 중심이 되고 부산이 협력하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특구’는 해수욕장부터 항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레저선박 자율운항과 해양안전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실증함. 우선 레저선박 자율운항은 경북과 부산 각각 실증 후 교차 실증하고, 무인 해양안전 모니터링 및 무인구조시스템은 경북에서 초기 검증한 후 부산에서의 검증을 거쳐 전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번 실증에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의 실증특례 4건이 적용되었고, 실증 목표가 달성된다면 자율운항·무인구조·무인선 운용 체계를 정립하고, 해양안전 관리체계가 AI 기반 예방형으로 전환되며, 이를 통해 해양안전·자율운항 모빌리티 표준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은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도의 고도화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신기술·신산업 규제합리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하여, 총 4개의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음

① (전략 1) 밸류체인 기반의 규제자유특구 재설계

2개 이상 지방정부에서 산업 공급망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관된 규제를 동시에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신설 추진함. 2030년까지 총 5곳을 지정할 계획이며, 이번 특구위원회에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첫 지정키로 하였음.

② (전략 2) 실증 성과에 따른 규제개선 이행력 강화

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시부터 규제부처와 협력해 규제실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법령정비 방향을 수립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② 특구별로 중소벤처기업부·규제부처·지자체·전문가·참여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실증진행상황 및 규제정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③ 규제실증이 안정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미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상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제개선 이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임

③ (전략3)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특례 제도 개선

① 규제부처에서 규제특례를 부여하면서 특구 사업자에게 이행이 불가한 부가조건을 무리하게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만일 무리하게 부가조건을 부여할 경우에는 부가조건 부과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규제기관에서 입증하도록 하고, ② 지역특구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전면 재정비해 신기술·신산업 특례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특구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임

④ (전략4) 정책간 연계를 통한 특구기업 성장지원 강화

① 5곡3특 성장엔진 관련 규제특례를 기획·발굴하고 메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신청시 우선 지정하는 한편, 정부 창업자원을 패키지 지원하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별로 지역에 맞는 신기술·신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② 규제자유특구 참여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자금·기술·판로·해외진출 등 연계 지원해 나갈 계획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재정경제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11 시행 예정

조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비축물자를 인도적 지원 및 재난·경제위기 대응 등 공익 목적에 한정하여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20호, 2026. 3. 10. 공포, 9. 11. 시행 및 법률 제21715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비축물자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려는 자는 비축물자의 사용 목적·필요성, 비축물자의 품명·수량 및 사용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03 시행
-------	-----------------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731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 등으로 정하고, 해당 보험 또는 공제의 보장내용, 가입대상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소방청장에게 협의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01 시행
-------	---------------	---------------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船貨主)기업 인증 대상**을 ‘화주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09-18 시행 예정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공포, 9.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을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하고,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에 드는 수수료의 일부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수소에너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절차와 지원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예산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09-03 시행

민간투자시설의 임대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시 고지 및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21752호, 2026. 6. 2. 공포, 9. 3.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시설의 귀속시설 여부 등을 해당 시설을 임차하려는 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주무관청에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해양수산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2026.09.02. ~2026.10.13.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전화: 051-773-5835, 팩스: 051-773-5889)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02. ~2026.10.12.
-------	--------------------------------------	-----------------------------

개발제한구역 내 공항의 관제탑 등 항공안전 관련 시설을 기능에 필요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교통관제시설에 대해 높이 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주택 등이 철거·멸실된 경우 신축이 허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유자 전원동의 등 요건을 갖춘 공유토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토지분할 면적기준의 본문과 단서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 공원을 그 성격에 맞게 생활편익사업유형에서 환경·문화사업 유형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전화: 044-201-3746, 팩스: 044-201-557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9.01. ~2026.10.12.
----------	-------------------	-----------------------------

핵연료물질 사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와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한 교육 주체 및 대상을 구체화한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9호, 2026.5.19.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수정체 선량한도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3, 팩스: 02-6273-78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	-------------------------	---------------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동시에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하여, 올해 3월 형법 개정을 통해 간첩죄의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된 바 있음. 하지만 현행 ‘적국’에 대한 간첩죄의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외국’을 위한 간첩죄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에 불과하여, 형량의 형평성 차원 또는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우방국이라도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경우에는 적국에 버금가는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미국, 영국, 중국 등은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한 자에게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하여 훨씬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 기준을 보면, 그 범죄의 목적상 ‘기업’이 제외된 채,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로만 규정되어 있는 동시에, 간첩죄의 대상을 ‘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로 한정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산업스파이를 경제적 간첩범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외국 간첩죄 기준의 대상에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을 추가로 반영하고, 국가기밀 외에 ‘국가핵심기술’을 포함시키는 동시에, 외국 간첩죄의 형량을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기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98조의2)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	-------------------------------	---------------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인바, 적발, 조사 및 제재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 조사는 심리, 계좌추적, 문답 등 여러 단계가 요구되어 수사기관 이첩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통신자료 보관기간(실무상 통상 1년)이 도과하거나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경우 공모관계 및 정보전달 경로의 입증에 곤란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 조사공무원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전기통신 개시·종료시간, 발·착신 통신번호, IP주소 등) 및 통신이용자정보(이용자의 성명, 주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고 함 (안 제427조, 제427조의3 및 제427조의4)

아울러,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유형(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대해서만 위반행위에 사용된 원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원금 몰수·추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까지 확대하고자 함** (안 제447조의2제2항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2인)

2026-09-01 발의

최근 정부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명분으로 개별주식의 일일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국내 출시를 허용하였음.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집중투자하면서 레버리지까지 일으키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임. 투자손실이 증폭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밸런싱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매도가 발생해 기초종목의 가격변동을 키우는 등 시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손실위험과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일단 열고 나중에 막는’ 졸속 금융 행정을 바로잡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0인)

2026-09-01 발의

현행법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을 수행할 때의 주요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으로 주요 원재료의 가격과 주요 에너지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용은 노무비임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의 변동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에 적용되지 아니하여 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노무비도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2조 및 제3조제2항)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2026-09-03 발의

현행법은 혁신금융사업자로 하여금 지정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는 경우에는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혁신금융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후속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지정기간의 만료로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며, 인·허가 재신청 과정에서 후발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가 있는 경우 인·허가 총량제한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특례제도에 영구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청 기회를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인·허가 심사 시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혁신금융사업자가 신설되는 제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10조의2제6항·제7항, 제21조제3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의원 등 10인)

2026-09-03 발의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상장기업들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고 자본시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음. 특히 다수의 상장법인이 과도한 현금성 자산을 내부에 유보한 채 주주환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자기자본이익률(ROE, Return on Equity)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주가 하락 유도 행위 등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Price to Book Ratio)을 1 이하로 유지하는 등 자본 운용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가순자산비율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1 미만이고,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이며 2개 사업연도 평균 이익배당총액이 10% 미만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목표 배당성향 및 자기자본비용(COE, Cost of Equity)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1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2026-09-03 발의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부 경영규율장치로서 인수합병(M&A) 시장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기업 중 약 69%에 해당하는 기업(2025년말 기준)이 PBR 1배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는바, 이는 미국 약 20%, 일본 약 36% 대비 저평가기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수준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업 본질가치 대비 현저하게 저평가가 지속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경쟁사 또는 사모펀드 등이 공개적으로 인수 제안을 하며, 대상회사의 이사회는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M&A 제안에 대해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찬성, 반대 등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논의 경과와 찬반 사유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의 의견표명과 정보 공시에 대해 아무런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예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도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주요사항보고서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판단 결과를 논의 경과 및 사유를 포함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표명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A 과정에서 이사회의 책임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기업가치 제고 및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의 저평가 해소를 통한 자본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138조제1항 및 제161조제1항 등)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2026-09-04 발의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직권으로 인지하여 조사하였음. 그런데 영국, 호주 등의 해외 국가와 달리 직권조사의 대상 선정 및 집행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조사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직권조사 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그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대상 선정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80조제1항)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위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후 해당 물품의 반출을 지연시키거나 국내 시장으로의 신속한 공급을 이행하지 않아 할당관세 지정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을 위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징수하며, 관련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할당관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물가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4인)

2026-09-01 발의

최근 미국·유럽연합·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자국 산업 및 공급망 보호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자국 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특히 중국산 전기자동차는 자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생산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내에서 고용과 투자를 유지하면서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쟁여건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전기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전장부품·반도체·소프트웨어·소재 등 광범위한 전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고 대규모 지역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핵심 제조업임. 따라서 국내 전기자동차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공급망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생산기업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생산단계의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자동차를 직접 생산하여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차량 1대당 400만원을 기준으로 생산실적에 따른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비수도권 생산에 대하여 우대계수를 적용하도록 하며, 제도의 적용기간과 단계적 축소구조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생산연도와 판매·수출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판매 또는 수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위탁생산·특수관계인 거래·반품·중복공제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집행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03 제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은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등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자기주식의 취득·처분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내국법인의 원활한 해외 사업구조 변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지배 관계의 외국법인 간 사업구조 변경 과정에서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비율을 상향하고, 환경친화적 업무용승용차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를 조정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03 제출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되 공제 제도를 활용한 상속세 부담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상속에 대한 납부유예의 적용대상, 요건 및 한도 등을 정비하고, 최대주주가 상장기업의 주가를 인위적

으로 누르는 행위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순자산비율이 유사 업종 대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낮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시점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장주식 평가기간을 확대하는 등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신탁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03 제출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추가하고, 성실한 납세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별로 납세신고한 과세가격 및 세액의 적정성 등을 관세사 등이 확인·검증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관세행정상의 지원 또는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도입하며,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유인 제고를 위하여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물품 중 물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하여 집중관리품목으로 관리되는 물품은 수입신고 기한을 종전의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마약류 등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단속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항 및 항만시설 출입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6-09-03 제출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공제율 등을 상향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한편,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 관련 국내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격품목의 생산·판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 촉진을 위하여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의욕 확대를 위하여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및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재정경제기획
위원회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
인)

2026-09-04 발의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최근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세제혜택 등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전략기술 기반 확보를 위하여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국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국방위원회

국방첨단전력사업에 관한 법률안(김병주의원·
유용원의원 등 16인)

2026-08-31 발의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절차는 목표성능을 사전에 확정하고 완성된 체계를 일괄 양산하는 절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적합하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같은 장비라도 운용목적에 따라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로 구분되어 상이한 소요결정·획득절차가 적용되고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그 경계가 더욱 모호해지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은 성능과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기술의 변화 주기도 짧아,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를 구분하고 완성품을 일괄 양산하는 현행 절차로는 이를 적시에 전력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그 결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국내 제품이 배제되고, 개발 실패 시 장기간의 전력공백이 초래되며, 획득기관과 운용부대의 분절로 실사용 경험이 개발에 환류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구분이 없는 첨단전력체계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소요결정, 유연한 협약·계약, 최소기능품의 우선 배치와 반복적 성능개량을 통한 유기적 순환개발, 인증목록을 통한 신속구매 등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제도와 절차를 별도로 정함으로써,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자주국방을 구현하고 국방첨단전력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지역방송은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는 핵심적인 지역 미디어로서, 지방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통합, 지역문화의 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기존의 수도권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재난·재해 등 지역주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최근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및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방송광고 시장의 축소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지역 콘텐츠 제작과 지역 저널리즘 등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큰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를 해당 계획의 수행에 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1항제15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4인)

2026-08-31 발의

국가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지식창출과 함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경제적 성과로 확산하여 이를 다시 후속 투자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 정부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은 대가 없는 출연방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더라도 그 성과를 함께 향유하고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지원의 대가로 지분을 획득하여 성과의 공유와 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출자 방식의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새롭게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정의 및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출연 방식 중심의 관리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 기금의 출자, 출자금의 사용, 제재처

본 특례, 성실수행 담당자의 면책 등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신설함으로써, 투자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2026-09-01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디지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 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1조, 제44조의1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2026-09-01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운용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화형 서비스의 경우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없어, 이용자가 장시간 대화 하거나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경우 인공지능을 실제 사람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6-09-04 발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3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2026-09-01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관광안내시설·숙박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이라도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관광특구로 지정될 수 없고, 기반시설을 미리 확충할 지원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은 지역으로서 운영을 시작하면 관광특구 지정기준을 갖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기간 5년 이내의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과 기금 대여·보조는 지정된 때부터, 특례는 운영을 시작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의3, 제72조 및 제74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2026-09-01 발의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음

발명을 한 연구자와 그 권리를 승계·관리하는 공공연구기관 또는 전담조직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및 전담조직의 권한과 보상은 연구개발 과정에서 누가 어떠한 실질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연구비·시설·장비·인력의 제공, 권리화 비용의 부담 및 전문적인 사업화 지원 등 각각의 구체적인 기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특히 통상적인 권리관리 또는 행정지원만을 이유로 연구자의 창업을 제한하거나 창업기업에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해서는 아니 됨

이에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제품화·매출·고용·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지연·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또한 자신이 개발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연구자 창업기업에 우선협상권과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자와 공공연구기관 등의 실질적 기여에 상응하는 공정한 계약조건과 보상체계를 확립하며, 기술료의 감면·유예·분할납부·성과연동 및 지분 방식, 처리기한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재검토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공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연구자 중심의 기술창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09-01 발의

최근 지식산업센터가 단기간에 과다하게 공급되면서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입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반면, 도심에서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소형 주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택 또는 준주택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이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도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제한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적합 의무를 두고 있어, 유휴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것은 현행 법체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시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2026-09-02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2026-09-01 발의

최근 한류문화 확산에 따라 우리 식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수출 상대국의 통관단계에서 식품의 기준규격이나 표시기준 위반 등으로 인한 부적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임. 이에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에게 수출 상대국의 식품 기준규격, 표시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식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식품 안전 규제 정보를 수집하여 우리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① 재생원료에 관해 인정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인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9조의2)
- ② 외국의 식품 등 규제에 관한 업무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으로 정하여 수행토록 규정함 (안 제67조·제68조)
- ③ 식품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의 식품 등 규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해외진출 기업 등에 제공하며, 외국의 식품 등 규제 관련 고충 사항을 발굴 및 해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90조의3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2026-09-04 발의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평가·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기술의 혁신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2026-09-02 발의

현행법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근로자로 규정하고, 사업주가 이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원 처리, 상담, 교육, 돌봄, 운송, 공동주택 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민원인·이용자 등 제3자를 상대하는 근로자도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거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방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를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근로자를 건강장해 예방조치의 대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업무의 명칭이나 고객 응대가 주된 업무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등 제3자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2026-09-03 발의

최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근로환경이 우수하고 근로자의 복지 및 행복도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지원하는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고용에 관한 시책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업의 인종과 일자리 창출 기여자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고용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항제11호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6-08-31 발의

현행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대규모로 멸실되고 이주 수요가 특정 시기·지역에 집중되면서 인근 임대차시장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대해 정비사업이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 운용에 의존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하며, 인가권자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52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2026-08-31 발의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이하 “선분양”이라 함)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이하 “후분양”이라 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후분양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분양을 통한 건설자금의 유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주택법」상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이에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54조의3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 및 대형 건설공사가 급증함에 따라,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가 공사용 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도로로 무분별하게 운행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심각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주민의 주거환경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의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운송차량이나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만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여 특정 지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을 뿐, 도심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를 지정하거나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은 건설기계를 포함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만 건설기계의 안전한 도로 통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제는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이 가능한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여 건설기계의 조종자가 이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주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3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2026-08-31 발의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연구·관광·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이용 및 보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와 신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체계적인 육성 등 기업의 전 주기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지원을 강화하며,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및 신기술기업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연계되는 국가적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2026-09-01 발의

현행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는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제3채권자에 비해 수급인의 부실 인지 시점이 늦을 수밖에 없고 부실을 인지하더라도 수급인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제 때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1회 이상 지체 후 하수급인이 수급인에게 7일간 이행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독촉하도록 하고, 위 기간 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직접 지급청구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2인)

2026-09-02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9-02 발의

최근 농촌지역 단독주택에서 옥상 누수 방지를 위한 비가림용 지붕에 대하여 무단 증축에 해당하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런데 옥상 비가림용 지붕 설치를 현행 증축 절차를 거쳐 실행하려면 구조 안전 확인 등을 위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방수를 위해 해당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옥상 비가림용 시설은 대부분 최소한의 배수에 필요한 정도로 높이가 낮고, 하부 공간은 벽체의 기능을 하는 수직면도 없어 실사용 면적의 증가가 없음에도 건축물의 높이가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사고 방지나 기본적인 주거환경 유지 등을 위하여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사후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행정과 민생현장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9조 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9-03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복리시설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같은 노인복지시설도 노인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해당 시설의 설치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5항)

국토교통위원회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한병도의원 등 25인)

2026-09-03 발의

이동로봇은 고정된 작업공간이 아닌 실내 또는 실외 공간을 자율 또는 원격으로 이동하면서 배송·보안·주차·건설작업·충전·유지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지능형 기계장치로서,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미래 신산업의 핵심 분야로 공동주택·건축물·건설현장·주차장·실내공간·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 곳곳에서 그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임

그러나 현행 관계 법령은 로봇 제품의 기술개발·인증·보급 등 산업진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동로봇의 활용 단계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주차장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수의 일반법에 분산되어 있어 이동로봇의 활용을 수용할 수 있는 통합적 제도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이동로봇 운영자는 사업화 단계에서 시설 입지, 건축물 설비와의 연동, 분야별 운영기준, 책임보험 가입, 영상정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의 공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요구됨. 이동로봇이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현재 시점에 맞추어, 이동로봇의 상용화 및 안전관리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로봇 제품의 개발·인증·보급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정책을 유지하되, 이동로봇이 이용되는 분야별 활용 기반 조성, 분야별 특례,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이동로봇 산업의 활성화와 국민의 안전·편의 확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7(월) 10:00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9/8(화) 10:00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9/8(화) 14: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9/9(수) 10:00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김승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법률안 심사
재경위	전체회의	9/8(화) 14:00 -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형일) 인사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과방위	전체회의	9/8(화) 11:00 - 법안 상정, 업무보고 등
문체위	체육관광 법안소위	9/8(화) 14:00 - 법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9/10(목) 10:00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강신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8(화) 본회의 산회 직후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복지위	전체회의	9/11(금) 10:00 - 법안 및 청원 상정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9/8(화) 본회의 산회 직후 -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장 선출의 건
예결위	결산심사소위	9/8(화) 11:00 -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7(월) 10:00	살얼음판을 걷는 한미동맹	김건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9/8(화) 13:30	녹색산업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김정호·안호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9/8(화) 14:00	빈집이 삼킨 지방경제: 악성 미분양 3만 가구, 수도권과 벌어 지는 격차	장종태·엄태영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8(화) 15:00	산업안전보건체계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영 국의 위험관리형 규제방식 도입 세미나	김주영·김형동 의원실 등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9/9(수) 10:00	에너지 산업국가전략 국회 연속토론회: 2차-무탄소 PPA 확대 와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박정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9/9(수) 13:00	유니콘은 어디서 시작 되는가	김한규·배현진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9(수) 14:30	한·미 방산 협력의 미래: 2026 주한미국상공회의소-국회 정 책 세미나	유용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0(목) 09:50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10(목) 10:00	국산 NPU 수출 확대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고동진·이상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10(목) 14:00	대한민국식품제조 CEO미래포럼	송옥주 의원실	의원회관 대 회의실
	9/10(목) 14:00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의 과제와 K-MSR 운영 방향	박정현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9/11(금) 15:00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김영배·복기왕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강당
자료집 등	9/9(수)	「Data&Law」 제2026-11호(통권 제49호)	국회도서관	
	9/9(수)	「금주의 서평」 제2026-35호(통권 제794호)		
	9/10(목)	「금주의 World Law」 제2026-35호(통권 제35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47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8/31(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1호(통권 제35호)	국회도서관	
	9/1(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17호(통권 제305호)		
	9/2(수)	「금주의 서평」 제2026-34호(통권 제79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8/31(월)	건설/부동산	월간 건설부동산 뉴스레터
8/31(월)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
9/1(화)	환경	2026년 8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9/1(화)	건설/부동산	공사현장에서 측정된 소음자료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9/2(수)	건설/부동산	주택개발사업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상 정산구조에 따라 실제 토지매입비용의 초과분 공제를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9/3(목)	방송통신(TMT)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로 확보한 AI 학습용 데이터 29종 본격 개방
9/3(목)	건설/부동산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후의 추인의결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다는 논리로 조합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